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만금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0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총괄 검토의견	6
IV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7
1.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편제2장제3절)	7
2.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제3편제3장제1절) ..	53
3.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4장제2절)	10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첨단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집적·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및 기회발전 특구 내 규제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을 미래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략을 구체화하고, 새만금을 수소·재생에너지·인공지능·로봇·미래모빌리티 및 첨단 데이터센터 등이 집적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첫째, 국가산업단지 및 수소특화산업단지에서의 수소경제 이행 시범사업,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 및 새만금 수소인공지능시티 조성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수소의 생산·저장·활용과 도시 단위 실증을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둘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특화기업, 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수상태양광 산업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전력계통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전환과 관련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려는 것임.

셋째, 지능형 로봇 및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로봇 실증특구 지정, 자율이동형 로봇 실증, 로봇제품의 구매 지원, 시험·인증 기반

구축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전북자치도를 로봇·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넷째, 인공지능 클러스터 및 집적단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뱅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인재양성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새만금을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다섯째,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연구단지·실증구역을 연계하고, 자율주행·친환경 모빌리티·도심항공교통 및 로봇 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여섯째,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에너지 폐자원의 순환이용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고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곱째,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처분 특례,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및 투자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전략산업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초광역권 간 경쟁에 대응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에 에너지·수소·인공지능·로봇·미래모빌리티·투자 촉진 관련 특례를 폭넓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데이터, 로봇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결합된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동일·유사 특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산업·에너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수소 및 재생에너지, 인공지능·데이터·로봇, 미래모빌리티, 녹색융합산업, 투자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다른 지역특별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조항은 지역 간 제도적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일부 조항은 개별법상 사무배분 체계, 국가 전략산업 및 에너지·환경 정책의 추진체계 및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기반시

설 확충,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재정소요, 지원의 우선순위 및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전북자치도의 특화발전 기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특례는 관계 법령 체계, 국가재정 여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역시 특례 발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산업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제도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전북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수용할 필요가 있는 특례와 관계 법령 및 국가정책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한 특례를 구분하고, 특례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며 관계 부처 협의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편제2장제3절)

(1)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제30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및 수소특화산업단지¹⁾에서 수소산업 육성, 관련 서비스 보급,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 수소특화산업단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운영 등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24조²⁾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수소산업의 육성·발전,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등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운영”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및 수소특화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水電解)³⁾, 그린수소 생산·공급, 수소모빌리티 및 스마트 도시 실증이 추진되는 복합공간으로, 개정안과 같이 도지사에게 시범사업 제안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역 특성과 투자 일정에 부합하는 실증 과제를 발굴·조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물 전기분해) 기술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소법 제24조는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역시 시범사업 실시 권한을 여전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바, 전북특별법에서 별도의 시범사업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 수소법 체계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운영할 수 있어, 기능·규정 측면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과 서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⁴⁾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범사업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유사 분야에 대한 지역 특별법 간 권한·지원 수준의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특화산업단지 및 국제수소거래소를 특정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향후 수소시장 제도 설계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시범사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업 대상을 국가산업단지 내의 수소산업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제30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그린수소⁵⁾ 육성을 위하여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전해 장치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전력의 직접 공급·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설비투자·전기설비 이용요금·수소 인증 비용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3(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이하 “그린수소”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이하 “수소생산촉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수소생산촉진지역에 설치된 수전해 장치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현행	개정안
	고 생산촉진지역에서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생산촉진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전해 기기 설비 투자 지원 2. 수소생산촉진지역 내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소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⑤ 그 밖에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수소법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특화단지 지정, 청정수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⁶⁾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수전해 설비에 대하여 전력시장 외 직접공급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새만금 일대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전해 설비를 연계한 그린수소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생산 클러스터 조성 협약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부안 신 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준공⁷⁾,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수전해 플랜트 조성계획⁸⁾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생산촉진지역 지정과 전력 직접공급, 설비투자 및 인증비용 지원 등의 특례는 이러한 계획·사업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2항의 전력 직접공급 특례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판매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전력 시장 제도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생산촉진지역 내에서 수전해 설비에 사용되는 전기와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전기를 명확히 구분·계량할 수 있는지, 우선 계통접속¹⁰⁾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는 그린수소 산업의 조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나,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7) 아주경제, “부안군,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준공”, 2025.09.24.

<https://www.ajunews.com/view/20250924150447427>

8) 머니투데이, “‘2029년 수전해 플랜트 가동’…현대차그룹, ‘수소 생산’ 본격화”, 2026.03.03.

<https://www.mt.co.kr/industry/2026/03/03/2026030210314045929>

9)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력시장: 전력거래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10) 제2항에서 말하는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한정된 송·배전망(전력계통) 용량을 다른 사업자들보다 먼저 배정받아 계통에 연결되도록 한전과 정부가 우선순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제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무회의 확정과 국회 보고 등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¹¹⁾ 생산촉진지역의 기반구축사업 역시 요건 충족 시 해당 조항에 따라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함.

따라서 전북특별법에서 생산촉진지역 내 기반구축사업을 포괄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예타 면제 제도와의 정합성, 재정건전성 및 사업선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개별 사업이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서 면제를 신청·검토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수소산업 육성 및 국가 지원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생산촉진지역 지정, 전력 직접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 특례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특별법 간 권한과 지원 수준의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해 설비 직접공급(PPA) 및 특정 지역·수요처 우선 계통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분리, 시장거래 원칙, 전력망의 차별금지·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하여 소비자 간 형평성 훼손·전기요금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PPA·계통연계 예외는 분산에너지 관련 기본법 체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2항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일원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특정 분야 예타 면제를 개별법에 규정하면 제도의 형해화와 유사 입법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3항의 예타 면제 특례 신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3) 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제30조의4 신설)

개정안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사용, 수소배관 설치, 수소모빌리티 보급·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 생산 단계에 더해 수요처와 활용 기반까지 함께 육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4(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 ① 기후에너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생산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우선 사용 촉진 2. 수소출하소와 수소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지원 3. 수소를 활용한 트럭·버스·트램·철도차량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실증 ② 그 밖에 그린수소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수소법과 정부 정책은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보급, 수소버스 확산, 수소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로 정부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우선 사용, 출하소와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수소모빌리티 보급·실증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린수소 산업은 생산설비 구축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한 수요처와 운송·배관망,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함께 확대되어야 공급망 전체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¹³⁾ 개정안과 같이 생산 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부문 사용을 촉진하고 배관·모빌리티 보급·실증을 연계 지원할 경우 수소 생산과 소비를 함께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지사가 지정한 전북 내 생산촉진지역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수소법 등 현행 일반법 체계 및 다른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중앙정부의 수소·모빌리티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린수소생산 촉진지역’ 개념이 현행법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1항의 그린수소 생산지역의 범위를 ‘도내’로 한정하고, 광역 배관에 대해서는 향후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상 공용 배관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모빌리티 중 아직 개발단계인 트램·철도차량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13) 월간수소경제, “수소모빌리티 보급, 보조금 없이 가능한가”, 2026.07.01.
<https://www.h2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4>

(4)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제30조의5 신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전해 플랜트에 대한 인증·인허가 통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 인증 및 국가·도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인허가·인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5(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제조·설치·운영에 관한 인증 및 인허가 통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에서 수전해 플랜트의 안전성·기술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내 수전해 플랜트의 신속한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현재 새만금 일대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대규모 수전해 플랜트 및 수소 물류·모빌리티 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수전해 설비, 수소 저장·배관·충전, 수소모빌리티 등 다양한 인허가 및 안전규제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바, 수전해 플랜트에 관한 인증·인허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시범지역 운영은 관련 절

차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통합제도의 설치·운영 및 전문기관 지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설계·운영할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특정 지역 특별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수소법 등 모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와 역할 분담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또한 전북자치도를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시범지역으로 명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만금 투자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특정 지역을 법률상 우선 시범지역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다른 수소특화단지 및 잠재적 수전해 설비 입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향후 유사 특례 요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플랜트형 수전해설비의 복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인증·인허가 통합제도 및 전북자치도 시범지역 지정에는 공감하되, 수소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 전문기관 지정·인증에 관한 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제30조의6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를 수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6(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¹⁴⁾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도시 모델은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를 연계한 실증도시로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새만금 일대의 수전해 플랜트·수소 모빌리티·스마트도시 구상과 연계할 경우 수소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특화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시범도시 지정은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인바,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만 “우선 지정” 근거를 특별법으로 두는 것은 스마트도시법의 일반적 지정체계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잠재적 후보지와 의 형평성 및 국가시범도시 지정기준의 객관성·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범도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는바,¹⁵⁾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⑦ (생략)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서 특정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모법의 재량구조와의 체계 정합성 및 다른 국가시범도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지정·지원은 스마트도시법 및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이미 전국 단위로 운영·개편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며,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무규정보다는 스마트도시법 제36조에 따른 재량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모법 체계 및 다른 시범도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수소인공지능시티의 관리·운영 등(제30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새만금 지역을 수소인공지능시티로 지정하고, 도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도시기반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수소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사업이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보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7(수소인공지능시티의 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으며, 도시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도시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통합 운영을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만금 지역에 수소인공지능시티(이하 이 조에서 “수소AI시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소AI시티의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AI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는 새만금 지역이 수소AI시티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또는 AI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도시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AI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전문인력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도시데이터와 AI기반시설의 종류 및 통합 관리·운영하는 업무의 범위, 제5항에 따른 위탁대상 기관 또는 법인, 위탁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 또는 용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개정안은 새만금 수소인공지능시터를 통해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서 국가 보조·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의 지정 및 도시데이터·기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은 국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아니라 관할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2항 단서에서 참조 조문을 스마트도시법 제4조(종합계획) 대신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6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보조·용자 지원은 스마트도시법·보조금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제3항의 별도 지원 규정은 현행 체계와 충돌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제32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0조제2항¹⁷⁾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에너지중점산업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으로 본다.

현행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과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에 대하여 모두 에너지위원회¹⁸⁾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중점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에너지산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운영 과정에서도 중점 육성산업이나 사업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성계획 변경 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중점산업을 도지사가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

18)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는 에너지정책의 국가적 정합성과 부처간 조정, 에너지산업 육성 방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²⁰⁾라는 점에서,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를 폭넓게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계획 변경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국가 에너지정책 및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을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²¹⁾ 등에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에너지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은 현행 에너지융복합단지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하는 핵심 정책결정 사항인데, 이를 전북자치도에 한하여 도지사가 별도의 중앙 심의 절차 없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의 형평성, 국가 차원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과의 정합성, 향후 유사한 권한 이양 요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6개 단지, 8개 시·도가 동일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심의 생략·지정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법체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에너지중점산업 변경은 기업 지원·에너지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제32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본다.-

현행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중에서 ①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③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²²⁾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우대가 연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²³⁾

2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개정안은 전북지역 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기업 지정과 지원 연계를 보다 신속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에너지융복합단지법상 에너지특화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의 일관성 및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권을 전북도지사에게만 부여하면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정책 신뢰성 저하 및 기업 쏠림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북 특례보다는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매출 기준 완화·서류 간소화 등으로 전국 단위에서 지정기준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9)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제32조의4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재생에너지와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의무와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분산에너지사업·지능형전력망 구축,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4(에너지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④ 도지사는 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근거를 두고 있고,²⁴⁾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수요관리 등 공익적 전력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⁵⁾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역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법령상 지원수단과 재원을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자립도시 구성에 연계·활용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에너지자립도시

2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조성에 관한 국가 지원 의무와 분산에너지·지능형전력망·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기존 에너지·전력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지방 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RE100 허브 정책²⁶⁾의 중장기 추진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국가 지원·기금 활용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²⁷⁾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부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과 동일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존 입법례와 정합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 이견 없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토교통부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26) 전자신문, “‘새만금, RE100 시대 심장’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허브 도약 기대”, 2025.12.16.

<https://www.etnews.com/20251216000154>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통합특별시장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0) 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제32조의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5(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⁸⁾ 개정안 제1항에서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을 비롯한 도내 전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 및 계통연계 기반 확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하고 있는바,²⁹⁾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제2항은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반면,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전환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기후·에너지전환 정책의 통일성 및 재정운용의 탄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에만 지역 에너지전환 지원 특례를 두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에너지전환 검토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도지사가 에너지전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생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남광주특별법과 같이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9)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한뜻…전북도, 한국전력과 업무협약”, 2024.11.0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11500055>

(11)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제32조의6 신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³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전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같은 법 제12조의7제1항³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6(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전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같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30)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현행 제도에서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 시장³²⁾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제16조의5³³⁾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거래 방식임.

한편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³⁴⁾ 이행 및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동일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중복 인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지침 및 거래시장 규칙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라는 제목 아래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을 전제로 하면서, 같은 조문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전북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관하여 직접 전력거래와 공급인증서 발급을 동시에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하여 ① 직접 전력거래를 통해 특정 수

32)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 운영하에 전기사업자 등이 거래하도록 하는 시장 (전기사업법 제31조)

33)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3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요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증하면서, ② 동시에 같은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RPS 의무이행 또는 시장거래에 활용하는, 소위 동일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권리·실적의 중복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공급 실적의 이중계상을 방지하려는 국내 RPS·RE100 제도 및 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체계의 기본원칙³⁵⁾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직접 전력거래와 공급인증서 제도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조달 및 인증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되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동일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급과 직접 전력거래를 양립 가능한 이행수단으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실제로 중복 이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권리중복 및 국제기준 위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정교화하고, 동일 발전량에 대한 직접 전력거래와 공급인증서 중복 이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설계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직접전력거래(PPA) 전력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REC를 발급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계상이 발생하여 RE100·GHG 프로

35)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환경속성(에너지 속성 인증서, EAC)이 하나의 소비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동일 전력에 대해 두 당사자가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공급 실적을 주장하는 이중계상(double counting)을 금지하는 것으로, I REC Standard 등에서 배타성·추적가능성·단일 귀속 원칙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토콜 등 국제기준에 저촉되고 PPA 참여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제32조의7 신설)

개정안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3천킬로와트 초과 사업에 대한 도 소속 위원회 심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갈음하도록 하며, 일정한 대통령령·부령 사항과 풍력발전 기준·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7(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권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또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현행	개정안
	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중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2만킬로와트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상 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통합특별시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갈음하며, 관련 대통령령·부령 사항과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기준·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³⁶⁾ 재생에너지

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지방분권 특례는 이미 다른 지역특별법에서 입법된 바 있음.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7GW 규모로 조성하는 등³⁷⁾ 재생에너지 집적 잠재력이 크고 관련 발전사업 인허가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 중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변경허가·심의 절차 및 일부 규정 위임을 도지사·도조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타당성 및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7) 경향신문, “전북 ‘새만금·서남권에 7GW 발전단지 조성’”, 2025.07.0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31141011#EN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계통 영향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중양급전발전기 기준인 20MW(2만킬로와트)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한하여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해당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도 소속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갈음하고 관련 대통령령·부령 사항과 지역 특성 반영 기준·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제32조의8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추진하고, 도지사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의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8(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

현행	개정안
	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서남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늘었지만 송전망·변전설비 부족으로 실제 판매·계통 연계가 막히는 계통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접속 대기 물량과 출력제어 우려가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³⁸⁾

정부는 호남·제주·동해안 등 계통포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선로 조기 건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출력제어 조건부 발전허가, 계통안정화 설비 도입,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마련·추진 중인바,³⁹⁾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전북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법정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된 송전·변전 인프라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38) 국민일보, “‘전기 넘치는데 못 판다’…전북 송전망 막혀 ‘재생에너지 공회전’”, 2026.03.1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550315>

39) 연합뉴스, “정부, 전력망 알박기 차단하고 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허가 낸다”, 2024.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055400003>

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⁴⁰⁾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 책임을 전북에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지역 우선지원에 따른 전력망의 형평성·비용부담 및 법체계상 쟁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전남광주특별법에 유사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 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장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14)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32조의9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대규모 연계로 계통 불안정이 발생하는 전북자치도에서 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⁴¹⁾에 대하여, 일반 발전설비보다 추가 설비비·운영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9(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직류 기반 설비를 교류 전력망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인버터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등 계통안정화 설비의 책임성과 성능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되었고, 정부도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 확대와 계통안정화 전용 플랫폼 도입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⁴²⁾

41)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는 전력계통의 동특성을 개선하고 주파수·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전기·계통에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로,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송전망 병목 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이러한 계통안정화 장치의 대표적 수단으로, 충·방전을 통해 태양광·풍력의 급격한 출력 변동을 완충하고, 계통 주파수·전압 회복에 기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계통 변동성을 줄이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42) 한국전력은 2023년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하고, FACTS, STATCOA, SSSC

그러나 계통안정화 전용 ESS는 송전망 병목 완화·주파수 안정·출력 변동 흡수 등 계통 편익은 크지만, 직접 판매전력이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등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어서 설치·운영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고, 계통 편익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⁴³⁾

이에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가 일반 발전설비보다 추가 설비비·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지원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통안정화 투자를 제도적으로 유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지원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⁴⁴⁾ 전북특별법 역시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후에너지

등 계통안정화 설비 확충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

43) 이성재, 「해외의 공유형 ESS 사례 및 사업모델 분석」, 전기저널, 2026년 2월.

국내 공유형 ESS 사업 활성화 제약요인을 시장·경제성, 이중 참여, 참여자 제약으로 구분하면서, 계통안정화에 기여하는 ESS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지역 유연성 시장 등 제도가 미비하고, 독립 시장참여자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비계약 ESS의 도매시장 참여가 제한되며, 전용 보조금·세제 혜택 부재로 사업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중앙계약시장 ESS는 공공계통안정 자원으로 단일 용도로만 운영되어 유희시간 활용과 수익 다변화가 어렵고,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고압 고객 중심 구조로 인해 저압·주택 고객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함.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환경부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1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2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등 일정 지역에 대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10(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 제33조 및 제36조는 시·도지사의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개정안 제1항은 이 신청대상에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와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같이 에너지자립·친환경·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직접거래 및 RE100 산업단지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은, 분산에너지법 제36조가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한 합의·심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장관에게 단독 우선지정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4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공모·심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정·확대되는 제도인바, 특정 지역에 대하여 법률상 “우선 지정”을 규정하는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정책의 전국적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을 규정하면 세밀한 검토가 어려워지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우선 지정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의 ‘우선하여 지정’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6)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32조의11 신설)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46)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체계를 전제로, 도지사가 산업단지 주변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구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

완충녹지에 대하여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⁴⁷⁾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11(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대하여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 및 시행령·지침은 도시공원·녹지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은 녹지의 설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건축물·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인정하고 있음.⁴⁸⁾

개정안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8) 인더스트리뉴스, “일상 속으로 다가오는 태양광,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2021.12.15.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61>

설치를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완충녹지가 대기오염·소음·재해 완화라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입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⁴⁹⁾ 개정안은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7)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32조의12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도지사로 하여금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12(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 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지역환원 모델도 함께 도입·검토되고 있으므로,⁵⁰⁾ 수상태양광을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지역상생 모델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려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50) 뉴시스,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본격추진…규모는 ‘100MW’”, 2024.10.31.
https://www.news1.com/view/NISX20241031_0002941305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국가에 수상태양광 육성 및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국가의 일반적 정책의무를 선언하는 성격이 강함.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자연스럽고, 이를 전북특별법에 두려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⁵¹⁾과 유사하게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와 같은 지역적 범위를 명시하여 전북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자치도에 대한 수상태양광 산업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제3편제3장제1절)

(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41조의2 신설)

개정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10까지는 지능형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실증·시험·인증 특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 제정되어, 지능형 로봇의 정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시범구역 조성 등 전국 공통의 정책 틀과 기본 개념이 마련되어 있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만으로는 실물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시스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9104호)이 발의되어, 시범지역 지정·운영, 규제특례, 데이터·인재·인프라 지원을 포괄하는 전국 단위 통합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

개정안 제41조의2는 국가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의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정하고,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실증 벨리, 김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 해양 무인로봇 테스트베드, 남원 스마트 APC AI로봇 실증센터 등 실증·산업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지능형 로봇과 피지컬 AI 분야의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⁵²⁾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지능형 로봇의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에서 전북의 수요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52) 전북일보,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2026.02.09.
<https://www.jjan.kr/article/20260209500202>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⁵³⁾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관련 특례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항 및 제2항이 임의규정으로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재량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의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거나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및 지원체계와 조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전북자치도가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합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 등(제41조의3~제41조의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이나 지능형 로봇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 등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제41조의3), 그 특구 내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의 도로·보도 운행 및 실증을 허용하며(제41조의4), 지능형 로봇 인지·판단 및 인간과의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제41조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3(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실증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이하 “실증특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역을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2. 지능형 로봇 제조 공장 등 로봇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실증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실증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실증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4(실증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의 운행 및 실증 특례)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중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서 실외이동로봇, 무인지게차, 자율운반로봇, 주차로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봇(이하 이 조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

현행	개정안
<신설>	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한하여 보도 또는 도로에서 자율이동형 로봇을 운행 또는 실증할 수 있다. 제41조의5(실증특구 내 개인정보보호 처리 특례) ① 실증특구에서 지능형 로봇의 인지·판단 및 인간과의 상호작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는 로봇의 자율주행, 객체 인식, 음성 인식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표정, 음성 등 개인의 행동·생체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이루어질 것 2. 연구·개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할 것 3.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출 것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증특구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협업지능 기반 퍼지컬 AI 실증 밸리, 김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 해양 무인로봇 테스트베드 등 로봇 실증·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제41조의3은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들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라는 틀로 체계적으로 묶어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법체계상 규제자유특구나 연구개발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실증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특구제도와는 별개의 자치특구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규제특례·안전관리 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제2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재량적 협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중앙정부의 심의·승인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지정한 실증특구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향후 퍼지컬 AI 특별법 제정 시 충돌 소지는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개별법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기보다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메가특구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제41조의4는 실증특구 내에서 센서·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이동형 로봇을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에 한하여 보도 및 도로에서 운행·실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3조⁵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임.

이는 로봇 배송·물류, 산업 현장 자율이동형 로봇 등의 실증을 촉진함으로써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비해 전북 지역에서 자율이동형 로봇 도로 운행을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관한 규율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 지정 실증특구에서 보도·도로 운행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자율주행차·로봇 배송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제특례 체계와 중첩·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이동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특구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외이동로봇의 도로 통행은 지능형로봇법상 안전인증을 전제로 허용되고 안전인증은 보행자·차량과의 충돌사고 예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요건이므로,

54)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2항의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3조” 적용 배제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41조의5는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⁵⁵⁾는 이미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는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개발 및 실증도 포함될 수 있어 보임.

지능형 로봇 인지·판단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위한 표정·음성 등 행동·생체 정보의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재식별 방지·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행 법제도 안에서 설계·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 가명정보 처리 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규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지역특별법에서 별도의 중복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1조의5에 규정된 데이터 처리활동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수행 가능한 가명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별도 특례의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정은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3) 로봇 실증제품의 구매 지원 특례(제41조의6~제41조의7 신설)

개정안은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지능형 로봇 또는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우선 구매를 고려하도록 하고(제41조의6), 민간 구매자에 대해서는 도의 구매보조금 지원 및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제41조의7)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6(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능형 로봇 또는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이하 “실증제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권고하거나 구매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실증제품의 범위, 우선구매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7(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로봇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제1항

현행	개정안
	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비율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시범구매·수의계약·구매면책 등 다양한 판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혁신제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구매목표비율 제도도 존재함.

개정안 제41조의6은 이러한 일반적인 혁신조달·우선구매 체계와 유사한 특례를 전북지역 실증 로봇제품에 부여함으로써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북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 시 우선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혁신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와의 관계,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로봇·AI제품과의 형평성, 개별 기관의 수요·성능·가격 등을 고려한 자율적 구매 결정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1조의7은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을 구매·도입하는 민간 수요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북 로봇

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 및 민간 확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기존 에너지·환경·모빌리티 등 분야별 보조금 제도와 달리 전북 실증특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 로봇·AI 기업 및 제품과의 경쟁·형평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시장 왜곡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3항은 지원 대상·한도·비율·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 이러한 조례 위임이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구매보조금 지원에 한정되는지, 제2항의 국가 재정지원까지 포괄하는지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입법 시에는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제41조의6 및 제41조의7에 대하여, 품질·성능과 무관하게 단순히 실증특구 내에서 실증은 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구매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타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4)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제41조의8 신설)

개정안은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농업기기,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을 “피지컬AI산업”으로 정의하고, 도지사의 종합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의 연구개발·사업화·인력·인프라 지원·자금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8(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농업기기,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이하 “피지컬AI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지컬AI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및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피지컬AI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피지컬AI산업의 집적화,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데이터·인프라·집적단지·실증기반 조성, 중소기업·창업·융합 촉

진, 전문인력·국제협력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물리적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이른바 “피지컬 AI”와 관련하여서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바, 피지컬AI산업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육성계획 등은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전국 공통적인 기준과 제도를 수립한 후, 필요하다면 개별 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법적 표준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피지컬AI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상위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5) 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인증 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41조의9~제41조의10 신설)

개정안은 피지컬AI산업의 시험·검증·인증·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관계부처와

협의를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이를 국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41조의9),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검증·인증 기준·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등 제재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제41조의10).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9(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피지컬AI산업의 시험·검증·인증·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험·검사장비, 전문인력, 품질관리체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센터는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안전성·신뢰성 및 현장적합성을 시험·평가하고 검증 또는 인증할 수 있다. 1. AI 기반 이동체 및 자율주행 농기계 등 2. 지능형 로봇 및 스마트제조 설비 3. AI 기반 에너지·환경 제어 시스템 4.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통합제어 시스템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융합 제품·서비스 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검증·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표시, 수수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 데이터 제공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10(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시스템을 검증·인증한 경우 3. 제41조의9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도조례로 정하는 검증·인증 기준 또는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 5. 검증데이터의 조작, 허위보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검증·인증의 공정성·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절차, 청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9는 도지사가 피지컬 AI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전문인력·품질관리체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뒤, 국가는 이에 대하여 국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및 각종 제품·설비 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 기준·절차를 법률·시행령·부령 및 고시 수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피지컬 AI 분야 시험·검증·인증기관의 지정·운영 체계 역시 원칙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 및 피지컬 AI 특별법 등 국가 차원의 일반법·특별법을 통하여 전국 단위로 설계하되, 이후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별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법적 표준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피지컬AI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상위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6)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41조의11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및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단위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연계시설의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글로벌 인재 유치 및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1(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단위 클러스터(이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시설 및 연계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참고하여,⁵⁶⁾ 전남광주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전북특별법에도 유사하게

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데이터 센터의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⁵⁷⁾ 인공지능기본법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음.⁵⁸⁾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과 연계하여 전 북자치도를 인공지능 관련 기반시설과 산업이 집적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특례로 볼 수 있음.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5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다만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클러스터 지정과 제2항의 국가 시설 구축·지원 규정이 결합될 경우, 국가의 인프라 구축·지원 의무가 개별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계획, 관련 예산 및 국가 전략 인프라 배치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내용의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1)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제41조의12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와 혁신거점-도 전역 간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2(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전북자치도민의 인

현행	개정안
	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전북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규정을 참고하여,⁵⁹⁾ 전북자치도를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재생에너지 기반 연산 인프라, 퍼지컬 AI·데이터센터·실증기반 등이 연계된 인공지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공지능 산업 육성, 실증기반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를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상 근거로 볼 수 있음.

다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의 조성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및 관련 계획, 재정 여건, 다른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1항의 “조

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의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에 관한 사항은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13 신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 전담기관 지정·운영비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3(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정부가 전담기관을 설치·지정하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⁰⁾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도지사가 추진한 집적화에 대한 국가의 지정·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의 선제 구축과 데이터센터 구축

6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보다 지원 범위를 확장한 특례로 볼 수 있음.

다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용수 기반인프라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제5항은 관련 부처의 입장 및 개별 법률과의 정합성, 국가의 재정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내용의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⁶¹⁾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41조의1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4(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시·도지사의 신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혁신사업에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부여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특례 적용을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

으므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⁶²⁾ 전북자치도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근거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4)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41조의1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 특정 지역에서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

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5(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이하 “인공지능데이터뱅크”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현행	개정안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정제·결합·비식별화·품질관리 및 제공에는 전문인력·기술·재원과 함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부터 기술개발·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은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제2항에서 국가가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

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이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자체라기보다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별도의 대규모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제2항에서 “제1항의 지역 내에”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도록 한 문언은 전북자치도 내에 물리적인 데이터 관리·활용 거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한 인공지능데이터뱅크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⁶³⁾ 제주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⁶⁴⁾ 해당 지역들에 데이터뱅크 시설의 별도 구축 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의 지역 배치에 관한 기대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뱅크의 “지역 내 구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64)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138호)

한편, 제5항은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내용의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5)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41조의16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육성하고, 국가가 관련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우선 검토하며 공동 연구·인프라·데이터·자원 공동 활용, 기업·투자 유치, 인력 양성, 교통 연계 등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6(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

현 행	개 정 안
	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의 구조와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47조와 동일하여, 인공지능·에너지 기반 특화산업도시 간 연계 육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

전 및 국가 신성장동력을 도모하려는 지역특별법 공통의 틀을 전북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지원 조문도 재량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위법 체계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한편,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 내용의 특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16)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제41조의1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대민·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투명성·보안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도입·운영 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려는 것임.⁶⁵⁾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7(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민 행정업

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유사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① 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개정안
	무 및 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정성·투명성·보안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과 신뢰·책임·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율형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정 정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정부·학계·업계에서는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을 사람의 세부 지시 없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설명하고 있어,⁶⁶⁾ 개정안에서 말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도 이러한 에이전틱 AI 기반 행정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법문에 용어만 도입할 경우 자율성의 범위, 인간 감독 수준,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책임 한계 등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의조항 또는 해당 조문에서 “자율형 인공지능

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방향 모색”, 2026. 3. 13.

행정시스템”의 의미를 간략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행정을 도입·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등 인공지능 관련 상위법에서 정하는 안전성·신뢰성·책임성 확보 원칙과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준수하여야 하므로,

제2항 문언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명시하고,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 도입·운영 시 인공지능 관련 법령상 안전성·신뢰성·책임성 확보 원칙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 체계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도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 도입 시 「전자정부법」과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등 인공지능 관련 법령 준수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충실한 이행을 명시하고, “자율형”의 의미를 행정 처분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반복업무 처리 등으로 한정 되도록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 및 준수 법령 범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7)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41조의18 신설)

개정안은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 이동 혁신과 공간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8(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⁶⁷⁾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특별법 간 정책 수준의 형평성과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도 유사 입법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한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근거를 부여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18)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및 규제 특례(제41조의19·2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관할 내 복수의 산업단지·연구단지·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 클러스터 관련 인허가 협의기한 단축, 통합창구 설치,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의 신속 처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클러스터 형태로 육성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19(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북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 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국제 품질 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현행	개정안
	시설 구축, 용도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⁶⁸⁾과 제주·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전북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2항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지정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국가가 규제특례,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전북 소재 특화도시에 한정된 개별 특례라기보다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원칙을 선언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됨.⁶⁹⁾

이와 같은 사항은 모법인 모빌리티혁신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타당하고, 전북특별법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회신 시 협의가

6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1항의 클러스터 지정이 어떠한 개별 법률의 개발사업 등과 연계되는지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인허가 협의기한 단축 및 미회신 시 협의완료 간주를 규정하는 것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를 해석으로 보완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므로, 그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5항은 국가로 하여금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는 도지사의 자체 지정에 기초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문이 어떠한 개별 법률상의 지원·규제완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검토의무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모빌리티 관련 일반법상 제도와의 관계, 특례가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 및 지원·규제개선 제도의 범위, 관계 법령에 대한 우선 적용의 의미와 법적 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북자치도에 적용되는 특례의 대상·요건·절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0 신설)

개정안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상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0(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위 개별 법률들은 각각 모빌리티 특화도시, 스마트도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신청의 접수, 심의, 특례 부여 등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⁷⁰⁾ 및 제주·강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어, 전북자치도에서도 규제 대응과 실증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권한 위임 특례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과 특례 신청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20)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1 신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⁷¹⁾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며, 국가는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1(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7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에도 같다.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지정 구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 차원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모든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지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193호)이 2026년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의 지방 이양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조치라기 보다는 제도 일반의 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5조에도 이미 유사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⁷²⁾ 전북자치도에도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주행 실증제도 측면에서 두 지역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지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의 실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유사 입법례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정 범위를 “관할 행정구역 내의 구역”으로 한정하고, 심의·의결 기관의 명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41조의2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⁷³⁾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특정 지역을 미래자동차

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정된 특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2(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해당 산업의 집적 정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의 전환 수요, 관련 기업·인력·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지·지구·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구조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지정 및

7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지구·지역 등
(이하 생략)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⁷⁴⁾ 제주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⁷⁵⁾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전북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화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우선 지정과 국가 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전환과 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과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는 법률상 모든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제도인바, 전남광주·전북·제주·강원에 공통적으로 “특화단지 등 우선 지정”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입지·지역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5)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324호),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38호)

(22)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제41조의23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고, 관련 연구개발·실증화·전문인력 양성·기업 집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3(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이하 “녹색융합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이동·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

현행	개정안
	정·분석·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분석·검증을 위한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입주 지원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종료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및 관련 기업·기관의 이전·입주 지원 9.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분야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10.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과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산업등의 육성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예정하고 있음.⁷⁶⁾

또한 같은 법은 녹색산업·녹색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⁷⁶⁾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실증화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두고 있으나, 그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계획적·재량적 구조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은 제1항과 제2항에서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을 국가의 재량을 전제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 지역의 특정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역특별법에서 전액 국비로 의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 다른 지역 및 산업 클러스터와의 형평성,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69조는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조성·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⁷⁷⁾ 지역

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문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전북자치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내용도 같은 법 제5조 및 제3장에 따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되 제3항의 전액 국비 지원 의무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⁷⁸⁾

(23)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4 신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그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8)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안

제41조의2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녹색산업 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적단지 입주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국가와 도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4(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령은 민간·공공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비용·기술 지원, 에너지 효율성·안전성·신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 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입주기업의 초기 운영비용을 별도 재정지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까지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 정책 체계에 더하여, 새만금이라는 특정 지역을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 및 고성능 연산 인프라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별법 차원의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됨.

제1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새만금 내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의 별도 지정과 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 지역을 국가급 데이터센터·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려는 최근의 정책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⁷⁹⁾

다만,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센터 지원체계와의 충돌 여부를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문언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항은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적단지 입주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국가와 도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직접 운영비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규정은 새만금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초기 단계에서 RE 100 데이터센터, 글로벌 기업 유치,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상당한 초기 고정비·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9) 조선일보, “새만금에 9조 쏟은 현대차… 국가급 첨단 산업 ‘테스트베드’ 본격화”, 2026.7.4.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6/03/25/FKOZP7UKKVBZ7P445KSXVYDOA/?outputType=amp

다만,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체계는 재정지원의 원칙과 절차, 지원 대상·방식에 관한 일반 규율을 두고 있는바, 개별 지역특별법에서 특정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운영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① 다른 지역의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의 형평성, ② 보조금 심사·성과 평가·중복 지원 통제 체계와의 정합성, ③ “운영비” 성격 지원에 대한 재정건전성·시장왜곡 우려 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제2항의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상위법이 정하는 지원 원칙·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이해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방식·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위법상 근거 조항과 연계하여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4) 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제41조의25 신설)

개정안은 로봇 및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⁸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비식별 조치 전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승인할 수 있게 하고(제1항),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내 대학·대학원을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5(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 ① 도지사는 로봇 및 AI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영상 및 음성의 원본 데이터(비식별 조치 전 데이터를 말한다)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승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

8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데이터 활용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데이터안심구역이라는 강화된 보안 환경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등 입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목적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이 로봇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CCTV 등 AI 기반 첨단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영상 등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⁸¹⁾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반법 개정을 통하여 동 개정안의 취지가 전국 모든 지역과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전국 단위 AI 산업·연구

81) 민병덕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5.1.31., 의안번호 제2207858호),
고동진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5.3.13., 의안번호 제2208904호)

활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한정된 데이터 활용 특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은 입법기술 및 체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국적·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규범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2항은 도지사가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로봇·AI·데이터·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도 재원을 투입하여 인재 양성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는 정부가 고등교육법상 대학·대학원, 과학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⁸²⁾ 지정 기준·절차·지원

8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용은 대통령령과 운영지침·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⁸³⁾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도 이미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제2항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이라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 제도 및 지방대육성법상 특성화 지방대학 제도와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혼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 및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대학·특성화 지방대학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4장제2절)

(1)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제74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현물출자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특례 적용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한 도의회 동의, 공공성·투명성·형평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대규모 투자유치의 범위 및 요건 2. 국유·공유 재산 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수의계약, 장기대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4.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환매권 행사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는 공공성·투명성 및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매각·대부 등에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장기임대·임대료 감면·분할납부 등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유치라는 정책 목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법제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전략투자 유치 과정에서 산업용지 확보, 장기 사용권 보장, 초기 투자비 절감, 신속한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법률상 한계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포괄위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중앙행정기관과 총괄청의 권한, 국가 재정 및 재산관리 원칙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도시사의 투자유치 필요성만으로 처분기준 전반을 폭넓게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도, 개정안과 같이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을 포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이미 규정된 투자진흥지구⁸⁴⁾와 연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67조와 같은 형태로 투자진흥지구에 한정된 구체적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⁸⁵⁾

8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

(2)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제74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특구 내 규제의 완화·변경·권한 이양 등 규제특례 부여를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3(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구 내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의 부여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관계 중

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신청 및 검토,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자치분권법”)은 시·도지사의 신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투자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⁸⁶⁾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과 행정·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은 유사 입법례 및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⁸⁷⁾

8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점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법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완화·권한 이양 등에 관한 규제특례의 근거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역시 기회발전특구에 관하여 우선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만을 규정할 뿐 별도의 규제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전북특별법에만 규제특례 신청·협의·통보 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제도적 형평성 및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통일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부는 제1항의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225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법에 규제특례 근거가 없는 만큼 법체계상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